

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관세청

Korea Customs Service

목 차

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

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(베트남: '23. 7. 15. 개통)	p.1
② 우수 재활용 제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지정 ('23. 3분기 시행 예정)	p.2
③ 파나마 해상 환적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 ('23. 7. 19. 시행)	p.3
④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('23. 7. 1. 시행)	p.4
⑤ Master B/L 단위 보세운송 신고 시행('23. 7. 18. 시행)	p.5

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

⑥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· 납부 서비스 시행 ('23. 8. 1. 시행)	p.6
⑦ 수입물품 6단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도입 ('23. 7. 14. 시행)	p.7
⑧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 ('23. 7. 11. 시행)	p.8
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 연장 ('23. 10. 1. 시행 예정)	p.9
⑩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편 ('23. 9. 1. 시행 예정)	p.10
⑪ 환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전업 제도개선('23. 8월 중 시행 예정)	p.11

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

⑫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('23. 7. 1. 시행)	p.1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1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1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* 구축(2개 국가, 3개 협정)</p> <p>* 원산지증명 정보가 관세당국간 전자교환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원칙적 생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-중 FTA('16.12) -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('16.12) ● 인도네시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-아세안 FTA('20.3) - <신 설> ● <신 설> ● <신 설> 	<p>□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(4개 국가, 7개 협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현행과 같음> ● 인도네시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현행과 같음> - <u>한-인도네시아 CEPA</u> ('23년下 예정) ● 베트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한-아세안 FTA('23.7.15.)</u> - <u>한-베트남 FTA('23.7.15.)</u> ● 인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한-인도 CEPA('23년下 예정)</u>

- **【기대효과】** 특혜관세 적용 절차 간소화, 물류·통관 시간 단축 및 해외 통관애로 방지 효과 등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
- **【시행일】** 베트남(한-베트남, 한-아세안 FTA)은 '23. 7. 15. 정식 개통, 한-인도네시아 CEPA 및 한-인도 CEPA는 '23년 하반기 개통 추진

②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우수 재활용 제품 지정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원산지 간편인정* 서류 및 품목</p> <p>* 관세청장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에 근거한 인증서·등록증·확인서 등을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친환경농산물 인증서’, ‘물김 수매확인서’ 등 18종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적용 대상 품목 (총 <u>1,200개</u> 품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산물: 1,028개 품목 - 수산물: 81개 품목 - 축산물: 5개 품목 - 식품류: 39개 품목 - 지역특산물: 47개 품목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□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 및 품목 <u>확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<u>확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현행과 같음> - ‘<u>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</u>’ ● 적용 대상 품목 <u>확대</u> (총 <u>1,225개</u> 품목)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같음>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우수 재활용제품: 25개 품목*</u> <p>*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, 정제연료유, 재활용 트레이드 타이어 등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재활용 물품 제조기업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3분기 시행 예정(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개정)

③ 파나마 해상 환적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당사국 경유·환적되는 물품의 한-미 FTA 직접운송 요건*</p> <p>* 한-미 FTA 협정문 제6.13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허용된 공정* 이외의 공정 미수행 * 하역·재선적, 양호한 상태로의 상품 유지, 운송에 필요한 공정 ● 비당사국 세관 당국의 통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현행과 같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현행과 같음> ● <현행과 같음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 시 한-미 FTA 직접운송 증빙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전체 운송경로*</u> 확인 서류 (선하증권 등) * 미국 → 파나마, 파나마 → 한국 ●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<u>‘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*’</u> * 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

○ **【기대효과】**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는 미국산 액체화물(원유·가스)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으로 기업 FTA 활용 편의 개선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7. 19. 시행(「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-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」 지침 시행)

4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5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관우대업체 정의 신설 • 전자상거래업체 중 일정 요건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신설 •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필수요건* 등 규정 *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신청, 사이버몰 직접 운영, 거래정보 전송 등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관우대 절차 신설 • 통관우대 대상물품*에 대하여 스마트 통관** 적용 가능 *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**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통관적체 해소 및 해외직구 소비자 편익 증진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7. 1. 시행(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 전부 개정)

5 Master B/L 단위 보세운송 신고 시행

(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94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House B/L 발행 화물의 보세운송 신고 방법</p> <p>• ‘Master B/L’과 ‘House B/L’ 모두 신고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House B/L 발행 화물의 보세운송 신고 방법 간소화</p> <p>• Master B/L만 신고 가능</p> <p>- 해상 소량화물(LCL)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컨테이너 야적장(CY)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*에 한함</p> <p>* 관세법 제213조제1항 참조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물류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

< 보세운송 신고 방법 전후 비교(예시) >

	<p>[기존] Master B/L(1개) + House B/L(2,000개) 모두 신고</p> <p>[개선] Master B/L(1개)만 신고</p>
<p>* 컨테이너(1대) = Master B/L(1개) + House B/L(2,000개)</p>	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7. 18. 시행(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)

6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·납부 서비스 시행

(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83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 신고 세관 • 2개 공항 - 공항 : 인천(T2) · 김포	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 신고 세관 확대 • 전국 15개 공 · 항만 - 공항 : 인천(T1 · T2) · 김포 · 김해 · 제주 · 청주 · 대구 · 무안 · 양양 - 항만 : 인천 · 부산 · 군산 · 평택 · 속초 · 동해 · 제주
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 신고 세금 납부 방법 • 세관검사 후 납부고지서(종이)로 세금 납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 납부 방법 간소화 • 세관검사 생략 가능 및 모바일(앱)로 전자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세금 납부 ※ FTA 세율 적용 · 외국환신고 · 검역대상 등은 제외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성실신고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8. 1. 시행

7 수입물품 6단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도입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 사전심사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물품 10단위 심사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처리기한 30일 • 수출물품 6단위, 10단위 심사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단위 심사 처리기한 15일, 10단위 심사 처리기한 30일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6단위 사전심사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물품 6단위, 10단위 심사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단위, 10단위 심사 모두 처리기한 30일 • < 현행과 같음 >

- **【기대효과】** 용도세율 적용 등 6단위 심사가 필요한 수입업체*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

* (예시) 6단위 사전심사 회신 후,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용도세율 세번으로 신고 가능

8414.10	진공펌프	6단위 회신
8414.10-9010	-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	실제 사용에 따라 세번 신고
8414.10-9020	-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	
8414.10-9090	- 기타	

- **【시행일】** '23. 7. 14. 시행(「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서식 개정)

8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

(공정무역심사팀, 042-481-798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·운영	<input type="checkbox"/>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·운영 ○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(별표1의 가 → 별표1의 나)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사후관리(AEO) 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최대 3년간 사후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사후관리(AEO)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, 원재료에 대해 1년 이내 기간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기간 단축 ○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제24조)

○ **【기대효과】**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경감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7. 11. 시행(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9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

(법무담당관실, 042-481-77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통지일부터 <u>15일</u> 이내 제출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 제출기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통지일부터 <u>20일</u> 이내 제출

- **【기대효과】**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
- **【시행일】** '23. 10. 1. 시행 예정(「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」 제9조 개정)

10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편

(심사정책과, 042-481-762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					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송물품 과세운임표*</p> <p>* 특송물품 중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역·중량별 과세운임 기준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준) 특송물품 중 <u>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</u> • (과세운임표) 대상지역을 <u>4개 지역</u>으로 구분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운임표 적용기준을 <u>명확화</u>하고 과세운임표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준) 특송물품 중 <u>수입신고 시에 운임명세서 등에 따라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</u> • (과세운임표) 대상지역을 <u>주요국가 20개* + 그 외 4개지역</u>으로 세분화하여 운임표 조정 <p>*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중국, 프랑스, 독일, 홍콩, 인도네시아, 일본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필리핀, 러시아, 싱가포르, 스페인, 대만, 태국, 영국, 미국, 베트남</p>								
<p>< 대상지역 구분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1지역</th> <th>2지역</th> <th>3지역</th> <th>4지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국, 일본 등</td> <td>태국, 베트남 등</td> <td>미국, 호주 등</td> <td>이집트, 페루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1지역	2지역	3지역	4지역	중국, 일본 등	태국, 베트남 등	미국, 호주 등	이집트, 페루 등
1지역	2지역	3지역	4지역						
중국, 일본 등	태국, 베트남 등	미국, 호주 등	이집트, 페루 등						

○ **【기대효과】** 과세운임표 적용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편의 개선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9. 1. 시행(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4조 개정)

11 환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전업 제도개선

(외환조사과, 042-481-794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환전업등록증(한국어 서식만 운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어로만 표기된 환전영업자 등록증 서식 운용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환전업등록증(외국어 서식 신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인 환전 고객을 위해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일본어) 표기 환전영업자 등록증을 신설하고, 등록증을 고객이 '식별이 용이한 곳'에 게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정지 처분 안내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안내문을 신설하고, 관할세관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의 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.

<신 설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외국어 표기 등록증, 영업정지 표지 등 서식 신설 및 식별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전 고객의 편의 제고 및 피해 예방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8월 시행 예정(「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3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물품 •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• 판매목적 물품 또는 대가지급 물품 • 가공무역목적 무상 수출입물품 •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초과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< 추가 ></u> 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 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 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"> < 현행과 같음 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건강기능식품 · 의약품</u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유해물품 통관심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

○ **【시행일】** '23. 7. 1. 시행*

* 다만, 전자상거래 우편물은 '24. 6. 30.까지 수입신고 유예(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에 관한 고시」 개정)